
우석대학교 차세대 지능형 학습플랫폼(LXP) DBMS(오라클) 라이선스 구매 과업지시서

2026. 07.



우석대학교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과업내용	정보통신센터	선임	황인성	063-290-1133
입찰관련	총무팀	선임	김한민	063-290-1063

목 차

I. 일반사항

1. 사 업 명	1
2. 과업목적	1
3. 납설치기한	1
4. 납품 및 설치장소	1
5. 계약의 범위	1
6. 입찰참가자격	2
7. 무상하자보수	2
8. 대가지급	2
9. 감독원	2
10. 보안유지	3
11. 시스템 설치 기준	3

II. 특수조건

1. 구매조건	4
2. 설치 및 운영지원	4
3. 물품검수 및 시범운영	5
4.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5
5. 제출서류	6
6. 기타사항	6

III. 납품규격서

납품규격서	7
-------------	---

IV. 붙임 및 서식

붙임 및 서식	8
---------------	---

I. 일반사항

1. 사 업 명 : 우석대학교 차세대 지능형 학습플랫폼(LXP) DBMS(오라클)
라이선스 구매
2. 과업목적 : LXP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SW 구매를 통해 SW 최적화 유지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제공
3. 납품 설치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4. 납품 및 설치장소 : 우석대학교 전산실
5. 계약의 범위
 - 가. 데이터베이스(오라클) 라이선스 납품
 - 나. 우석대학교 서버 장비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설치
 - 다. 공급된 시스템 운영에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 및 기술지원

- 서버장비는 학교에서 제공
 - 1) DB서버_1 (CPU 8core*1, 32G RAM, 1.2TB 2EA, Linux)
 - 2) DB서버_2 (CPU 8core*1, 32G RAM, 1.2TB 2EA, Linux)
- 신규 데이터베이스(오라클) 설치 및 학교 학사DB와 연동 활성화
- 응용프로그램 연계 테스트 협조

6.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및 데이터베이스관리 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3230401) 등록 업체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업체는 오라클社의 OPN (Oracle Partner Network) 오라클 협약업체(공급가능한 파트너사)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OPN : 오라클 공인 협력업체 자격

※ 위 요건을 갖춘 업체는 입찰기간(낙찰자는 계약완료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현장 투찰시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 OPN 인증서 제출

7. 무상 하자보수

- 무상 하자 보수기간은 운영(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8. 대가지급

- 본 물품의 구매는 일괄구매 방식으로 추진하며 물품의 설치 후 검수 후 지급

9.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감독의 임무를 부여받은 소속 직원을 말하며, 납품업체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검사 등을 수행한다.

10. 보안유지

- 가.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 자료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납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또한 보상해야 한다.
- 나. 납품업체는 정보시스템 운영실 및 지정장소 출입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련한 신원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다. 납품업체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11. 시스템 설치 기준

- 가. 납품업체는 납품 내역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공급 방식으로 구매·설치 완료 하여야 하며, 구매된 물품의 성능과 기능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 나. 시스템 구매·설치 시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는 구매자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의 구매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다. 시스템 설치에 따른 운반, 설치, 시험 등을 할 때에는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고 하드웨어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각 시스템의 정상적인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한다.
- 라. 납품업체는 장비납품 설치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 하여야 하며, 본 시스템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마. 감독원이 설치 시스템의 내용이 규격서에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바. 설치 중 시스템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피해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

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 하에 복구하여야 한다.

사.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구매·설치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II.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우석대학교 차세대 지능형 학습플랫폼(LXP) DBMS(오라클) 라이선스 구매』 사업에 학교가 납품업체에게 요구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 구매조건

- 가.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원제조사가 공급하는 동일제품이어야 한다. (Embedded 제품 또는 ELS 제품은 납품 불가)
- 나. 납품 시스템 내용이 규격서에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는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 다. 납품업체는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구매, 설치 건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학교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변상조치 할 의무를 가진다.

2. 설치 및 운영지원

- 가. 납품업체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세부 작업 공정표를 제출하여 학교의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납품업체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스템(서버, 스토리지 등)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납품업체가 자체적으로 사전 준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다. 납품업체는 S/W납품, 설치 진행 시 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 학교의 정

보시스템 운영실 또는 지정장소에 인원을 배치시켜 전반적인 사업진행을 총괄하여야 하며, S/W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작업을 주도하여 총괄 운영하여야 한다.

라. 납품물품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구매 물품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3. 물품검수 및 시범운영

가. 물품 규격의 확인은 본 설명서 및 구매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납품업체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나. 납품업체는 설치를 완료한 후 학교의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학교에서 요구한 항목에 대하여 정상 가동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현장시험에서 발견되는 예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납품업체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 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라. 납품업체는 검수 전 시스템 관련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학교의 실무 운영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마. 검수과정 중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학교의 감독관이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기관이나 유지보수 업체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4.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가. 무상 하자 보수기간은 운영(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장애발생시 납품업체는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8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하며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다. 납품업체는 고장수리 보장 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키지 못했을 경우 학교에 10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 규명에 많은 시일을 요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위의 기일 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납품업체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마. 학교가 추후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 등이 발생 할 경우 납품업체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계약 대상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해당 기일 내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요청 산출물은 “계약 대상자”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해야 한다.

가. 입찰 참가시 제출서류

- 1) 오라클 공인 협력업체 자격(OPN) 1부
- 2)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 5) 인감증명서(인감이 아닌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7)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나.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10일 이내 제출

- 1) 작업계획서(납품일정, 세부 작업계획서, 비상연락망) 1부
- 2) 보안서약서(대표자, 투입인력) 1부.
- 3) 청렴확인서 1부.

다. 검수 요청 시 제출서류

- 1) 설치완료보고서(사진, 납품확인 이미지 포함) 1부
- 2) 제품 라이선스 증서 각 1부
- 3) 운영·관리 매뉴얼 1부
- 4)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보안확약서 1부
- 5) 기술지원 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보수체계도 1부.

6. 기타 사항

- 가. 본 구매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학교와 납품업체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른다.
- 나. 학교와 납품업체는 본 시방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합의서 내용이 본 시방서와 상이 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가 우선권 적용된다.
- 다. 납품업체가 본 규격서의 내용에 있어 규격의 누락, 기준미달,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시방내용의 불이행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III. 납품 규격서

구분	주요 규격	비고
DBMS 라이선스	○ Oracle 21c Standard Edition2 Processor License - 프로세스 라이선스로 제공(무한 라이선스)	2식
설치작업	○ DBMS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적화작업 - DB Version UP시 Application 개발 환경에 최적화 지원 - DB서버 환경에 맞게 최적화 구성 - DBMS 통계정보생성 및 Plan정보를 통한 SQL 최적화 지원 - 시스템 안정화 기간동안 전담엔지니어 배정 (경력 10년이상) Oracle OCP자격 엔지니어 1명이상 보유 - 안정적인 DB운영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시 - 업무와 연계시 인터페이스 표준을 준수	

IV. 붙임 및 서식

[붙임 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붙임 2] 외주용역사업의 보안특약 조항

[서식 1] 보안서약서

[서식 2] 보안확약서

[서식 3]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4] 비밀유지 계약서

【붙임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우석대학교(이하 “학교”라 함)의 ‘차세대 지능형 학습플랫폼(LXP) DBMS(오라클) 라이선스 구매’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 ① 학교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④ 학교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 ① 참여 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② 참여 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학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학교에 반환한다.
- ③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④ 학교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학교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④ 업무 종료 시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입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하고 학교의 승인 후 반출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 ②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 ③ 학교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고 학교의 확인 후 사용한다.

바)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 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학교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 ②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학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③ 참여 직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참여 직원 및 용역사에 있다.
- ④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2】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조항

- ① 사업자는 우석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특약 별표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특약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학교에 납부한다.
-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특약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특약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특약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특약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보안특약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우석대학교 DBMS(오라클) 라이선스 구매』 관련 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우석대학교 DBMS(오라클) 라이선스 구매』 관련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학교에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우석대학교 차세대 지능형 학습플랫폼(LXP) DBMS(오라클) 라이선스 구매』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우석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석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석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석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석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석대학교」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석대학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우석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석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식4】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우석대학교(이하 “학교”라 함)가 ‘우석대학교 차세대 지능형 학습플랫폼 (LXP) DBMS(오라클) 라이선스 구매’ 용역(이하 “용역”이라 함)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대상자는 “용역”의 제안서 작성의사를 공사에게 제시한 후 “용역”의 제안서 작성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한 바, 동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 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학교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대상자가 “용역”을 위해 제안서 작성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역대상자는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학교의 서면동의 없이 용역대상자는 본 “용역” 건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 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위 2항에서 제한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용역대상자가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학교에 사전에 알려 학교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회수】

- ① 용역대상자가 학교와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가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용역대상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학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② 용역대상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학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용역대상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학교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자이며, 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정보의 범위】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9. 학교 기관 내부에서 생산 또는 접수되는 모든 문서 (대외비 포함)
10.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8조 【지적재산권 문제】

- ① 용역대상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학교에게 요청 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용역대상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용역대상자는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학교는 용역대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용역대상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학교와 용역대상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공사와 용역대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우석대학교

용역대상자 :

직 위 : 성 명 : 인 직 위 : 성 명 : 인